

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⑦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면 그 판결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에 해당되고 이와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 없다.

- ⑧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권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계결산으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⑨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하였는데,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삭제

(3)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시정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로

공탁규칙(형사공탁의 특례 등) 일부개정 2023. 12. 29)

(개정이유)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 등이 기재되고 그에 따라 형사공탁절차에서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 의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피공탁자가 공탁금에 관한 권리(출급, 회수동의)를 신속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형사공탁절차에서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제33조(공탁물 출급청구서의 첨부서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제29조에 따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나.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 다.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 라.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공탁서의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있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나. 제86조제1항에 따른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3. 공탁물 출급을 위하여 반대급부를 하여야 할 때는 법 제10조에 따른 증명서류 한다.

제81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형사공탁"이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는 변제공탁을 말한다.
2.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3. 법 제5조의2제2항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란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법원 또는 검찰이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5. "비실명 처리"란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

제82조(공탁서 기재의 특칙)

제20조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83조(첨부서면의 특칙)

공탁서에는 제2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3.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84조(형사공탁의 공고)

①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2제3항에 규정된 사항
2.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항

제85조(형사공탁 사실 통지)

① 공탁관은 제27조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 납입사실을 전송받거나 공탁물품 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그 변호사에게 고지한다.

제86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등)

-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 또는 검찰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판결선고 후 기록 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 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개정 2023.12.29>
- ③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④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⑤ 공탁소에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제2항의 구분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담당하는 법원 또는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⑥ 제4항 후문 및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 또는 검찰은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87조(열람 및 증명청구의 특칙)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피공탁자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등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3.12.29]

제88조(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군사법원으로, 검찰은 군검찰로 본다.

제89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장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에 규로 정할 수 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2024. 1. 23)

1. 개정이유

○ 「공탁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3119호, 2024. 1. 26. 시행)으로 피공탁자의 공탁금에 대한 신속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형사공탁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되도록 함(제9조제1항제4호)
- 발급담당자가 형사공탁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지체 없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도록 함(제11조)
-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제12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에 따른 구체적인 발급 절차 및 발급 불가 사유를 명시함(제13조)
-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진위 확인 방법을 정함(제16조)
-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포괄승계인이나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도 비실명 처리대상으로 정함(제17조)
-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방식 등을 정함(20조)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재판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탁신청

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제4조 (피공탁자 성명의 기재)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

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시 ○○구 ○○로 ○길 ○, ○○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제6조 (공탁원인서면)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제7조 (피공탁자 성명의 비실명 처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하여 입력한다.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제3장 형사공탁 공고 등

제8조 (형사공탁 공고)

① 공탁관은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탁소 및 공탁번호
 2. 공탁신청 연월일
 3. 공탁물
 4.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 다만, 피공탁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있지 않거나 가명이 아닌 경우에는 성(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한다.
 5.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의 성(성)이 별표 3 기재 이외의 성(성)일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른 공고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1.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 공탁물, 공탁 연월일
 2.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3. 규칙 제83조제2호 서면의 명칭
 4. 문서확인번호(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탁사실통지서의 문서확인번호란에 피공탁자별로 자동 채번되어 기록되는 16자리의 숫자 또는 숫자와 알파벳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수정한 후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탁서 정정신청이 수리된 때에도 이와 같다.
- ③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서 원본은 해당 형사사건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제10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 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11조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

①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형사본안사건: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2. 공탁사건정보: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3. 피공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② 제1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① 규칙 제86조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소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②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

제13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요청)

①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6조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5장 지급절차 등

제14조 (동일인 증명서 접수)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15조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②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제7조에 따라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 ①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제1항의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제6장 열람·복사절차

제17조 (비실명 처리의 범위)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 그 포괄승계인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18조 (열람·복사 제공의 방식)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제17조 기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제19조 (사실증명 제공의 방식)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 * 등' 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

제7장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절차

제20조 (공탁물 회수동의서 제출)

- ① 피공탁자는 해당 공탁소에 공탁물 회수동의서(이하 "회수동의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공탁관은 출석한 피공탁자에 대하여 그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말한다)를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우편으로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그 신분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회수동의서에 인감도장이 날인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인감증명서
 2. 회수동의서에 서명한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Q 형사공탁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소재지 공탁소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과 사건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공탁금이 납입되면, 공탁관은 법원과 검찰에 공탁사실통지를, 전자공탁홈페이지 등에 형사공탁 공고를 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경우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본인이 피공탁자가 맞다는 취지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공탁소를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 등을 첨부하고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습니다.

삭제

1)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 일부만 소개를 하며, 2023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참고해서 문제풀이나 최종정리 시 관련된 내용을 추가 보충할 예정입니다.

Q 피해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나요?

-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형사공탁서에는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해당 형사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로 증명하게 됩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소를 방문하여 공탁물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적용).

CHAPTER 01 변제공탁 99

아래 내용으로 교체

Q 기타

○ 공탁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이고, 피공탁자 본인(피공탁자의 포괄승계인 포함)이 출급 청구하는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 공탁소에서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 의 공탁사건처리 지침 적용).

02 **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1)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 주소지 공탁소

수용보상금 공탁도 기본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488조 제1항에 따라 채무 이행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의 채무이행지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채권자(보상금 수령권자)의 현주소지가 된다.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피보상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3)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 제외

수용보상금 공탁

아래 내용으로 교체

4)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권리 지칭은 수용보상금 공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된 경우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여러 사람 중 보상받을 사람이 특정되지 아니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그 중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성질상 피보상자의 주소지에 공탁할 수는 없으므로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

**(6)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 ① 가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주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치분채무자 또는 가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만약 가치분채무자 또는 가치분채권자가 권리의 주를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로 하는 확정지공탁을 하되, 위 가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치분의 효력은 가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이 부분에 위 내용 추가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용대상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의 공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바뀌게 되는 개인 채무자 또는 법인 채무자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수용대상토지에 한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③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등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다.

실 없이 누가 진정한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5)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 ① 가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탁근거법령을 토지 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2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만약 가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탁 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로 하고, 피공탁자는 '가처분채무자(부동산소유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치분의 총액은 가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2)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①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거나 수용대상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더라도 그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압류 또는 가압류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토지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6) 보상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과실 없이 그 상속인들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상속인들 전부)

세입자 인생이후 구에 번거러지므로 원 구장세입자 본인 생구제인 원에게 문의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

(6)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① 토지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사업시행자로서는 상속인의 범위 또는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② 수용재결 전에 보상금을 받을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로서는 그 상속인의 범위나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상속인 부존재로써 상속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을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도 있다.



(7) 피수용자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 미수복지구인 경우

- ① 피수용자의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

아래 내용으로 교체

- ①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상금 전부(피공탁자: 망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 병기]의 상속인)
- ② 상속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알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부분(피공탁자: 망 ○○○의 상속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병기] 외 상속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성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4)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 ①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한 경우도 포함)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 정보 및 확정증명, 질권(담보권) 실행이 아닌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보,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

3)... 으로 수정

㉔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하여 ‘피공탁자가 위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C압류가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한 후 피공탁자가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이 이를 불수리한 사례에서, 판례는 ㉓ 체납처분에 의한 A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래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는 주체일 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㉕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①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회수청구권 자체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B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체납처분에 의한 C압류 역시 무효이다. 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더라도 압류의 무효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으므로 위 각 압류가

c압류와.... 로 수정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바 있다.

5)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 ①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
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
따라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
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로 수정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 출
에는 [(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파
갖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한 경우도 같다] 피공탁자가 절
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
아니한다.

 관련 판례 / (대판 2005.5.26, 2003다12311)

- ▶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므로,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제3채무자가 종전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 또한 종전의 채권자를 가압류채무자 또는 집행채무자로 한 다수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결정이 순차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이 종전 채권자에게 변제되어야 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하는 이른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 채권양도 등과 종전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하여 항상 채권이 누구에게 변제되어야 하는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렇게 볼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할 것인지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삭제

8.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 ① 배당절차는 사유신고가 있는 후에야 사실상 개시될 수 있고에 의하면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을 때 배당절차가 개시된다고 규정됨)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확정된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 ③ 공탁관이 **삭제** 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관공탁의 종류

1) 상법 제491조 제4항에 의한 보관공탁

- ①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집청구를 받은 회사가 그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자신이 소집을 할 수 있게 된다.
- ② 하지만 이 공탁은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상법 제492조 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

이 사이에 아래내용 추가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채권자가 위 집회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을 사전에 공탁하여야만 위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491조 4항).